

성희롱예방 및 처리에 관한 시행세칙

제 1 조 (목적) 이 시행세칙은 성희롱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(이하 규정) 제13조에 의거하여 제주한라대학교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과 그 피해자 권리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피해자 의사 존중 및 피해자 보호) ①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의 해결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1차적 효력을 갖는다.

②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대리인을 동반하거나 선임할 권리를 가지며 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.

③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자는 사건의 조사 및 심의 과정과 처리방안을 피해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피해자 또는 대리인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학과나 학번·이름·주소·전화번호 등 신변 관련 사항과 사건 관련 자료, 인상착의 등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④ 피해자는 사건 처리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 또는 배제, 기타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이를 처리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.

⑤ 사건처리를 위한 제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⑥ 피해자는 특정 위원에 대해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.

제 3 조 (신고 접수)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의 진위여부를 파악하는 조사과정에서 상담실장은 전문적 자문이 필요할 때 피해자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은 채 이를 교내·외 전문가 또는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. 단 피해자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.

제 4 조 (비밀유지 의무) 상담실장, 상담원, 운영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사건과 관련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 5 조 (운영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) ① 조사·심의과정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.

② 최종 조사·심의까지의 기간은 60일 이내로 한다. 단, 당사자의 요청이나 필요시 연장할 수 있으며, 연장 요청 시에는 사유서를 제출한다.

③ 운영위원회는 조사·심의 시 피해자와 가해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④ 운영위원회는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대리인 선임을 허락할 수 있다.

⑤ 상담실장은 사건의 심의의결 결과를 피해자 및 가해자에게 즉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

제 6 조 (중재) ① 상담실장 혹은 상담실장의 위임을 받은 상담원은 피해자의 요구가 있

을 경우 위원회의 회부전에 가해자와의 합의를 중재하여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.

- ② 상담실장은 피해경도와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참조로 하여, 피해자와 가해자 양방의 합의 할 수 있는 조건들을 도출하도록 중재하며, 가해자가 실행하는지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다.
- ③ 상담실장은 필요한 경우, 제 3의 중재위원을 위촉하여 중재할 수 있으며, 중재로부터 발생한 합의사항을 가해자가 실행하는지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.

제 7 조 (위원의 제외) ① 운영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건에 관한 심의·의결에서 제외된다.

- 1. 위원이 사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, 있었던 경우
- 2.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사건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한 경우
- ② 피해자는 특정위원에 대해 심의·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.
- ③ 위 제1항의 1, 2,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은 당해 사건에 한하여 회피할 수 있다.

제 8 조 (징계 및 조치) ① 운영위원회는 징계요구조치를 의결할 수 있으며, 복수(複數)의 조치를 병과할 수 있다.

- ② 모든 징계 조치에는 피해자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한다.
- ③ 운영위원회는 가해자의 사전 동의를 조건으로 가해자의 공개사과조치를 할 수 있다.
- ④ 공개사과는 게시판, 홈페이지 등의 장소에 사과문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.
- ⑤ 운영위원회는 가해자에게 소정의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명할 수 있다.
- ⑥ 가해자 교육 프로그램 이수 교육은 상담실이 담당하며, 필요한 경우 교외 전문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.
- ⑦ 금전적 손해배상액의 한도는 피해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, 피해자의 피해 정도, 가해자의 지불능력 등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가 정할 수 있다.
- ⑧ 운영위원회는 조치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가해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.
- ⑨ 상담실장은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미한 사건에 대하여 반성문 제출 등 피신고자의 반성을 촉구할 수 있는 조치를 상담소 내규로 정할 수 있다.

제 9 조 (위원회 수당) 운영위원회의 위원과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 10 조 (재심의) ① 사건당사자는 운영위원회의 불복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.

- ② 재심의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15일을 넘길 수 없다.

제 11 조 (기록 및 자료보존) ① 상담실은 피신고인과의 면담시 면담내용에 관한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, 성폭력 관련자와의 면담내용을 녹취 및 녹화할 수 있다.

- ② 상담실은 성폭력 사건의 진위여부 조사, 면담과정 및 처리과정 등 전 과정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.

③ 재심의 신청과 재심의 과정은 사건 당사자 각각 1회에 한한다.

부 칙

1.(시행일) 이 시행 세칙은 2009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.(시행세칙 제정)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.